



1. 경찰개념 형성 및 변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사무를 다른 일반행정 기관으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었다.
- ② 1884년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은 자치경찰의 직무범위에서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제외시켰다.
- ③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경찰권 발동의 성질과 범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 ④ 우리나라의 미군정 시기 경찰은 경제경찰과를 폐지하고 종래에 경찰에서 담당하던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하였다.

정답 ④

- ④ (O). 미군정 시기, 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되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이 폐지**되었다. 단,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과는 미군정 시기에 처음 설치**되었음을 주의해야 한다.
- ① (X). 비경찰화는 범죄의 예방과 검거와 같은 **보안경찰 사무를 제외한, 협의의 행정경찰사무가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비경찰화를 통해 보통경찰기관은 보안경찰 기능만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 ② (X).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법치국가 시대”의 주요 법률과 판결의 하나로써, 여전히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가 경찰사무에 포함되어 있었다.
 

• 지방자치법전(1884): “자치단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찰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고 있으나 위생 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포함하고 있다.
- ③ (X). 영미법계는 경찰개념을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용’이라고 설명한다. 즉, 경찰개념을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반면, 대륙법계는 경찰개념을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국민에게 **명령·강제**함으로써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이라고 설명한다. 즉, 경찰개념을 **발동범위(공공안녕과 질서유지 목적), 성질(명령·강제)**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2.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 모든 지역에 적용되나 국내법적 또는 국제법적 근거에 의해 일정한 한계가 있다.  
 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공관지역과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불가침이다.  
 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 그 밖의 외교의 특권을 가진 사람 등의 관련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외교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①**

가. (O). 판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지역관할이라고 하며, 경찰권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 모두 적용됨**이 원칙이나, 다른 행정기관·관청 또는 국제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다. → **지역관할의 예외**: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국회경호권,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의 법정경찰권, 그 외 국제법(조약)에 따른 치외법권지역과 미군영내

나. (O)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①**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없이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30조 ①**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다. (O)

**헌법(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9조(대·공사 등에 관한 특칙) ①** 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외교 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
2. 그 밖의 외교의 특권을 가진 사람

라. (O)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29조**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서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어떠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경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가.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구분하며, 교통경찰은 보안경찰에 해당하고 건축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 나.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며, 봉사경찰은 서비스·계몽·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활동으로 방법 지도, 청소년 선도, 교통정보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다.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구분하며 예방경찰은 경찰상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활동으로 총포·도검의 취급 제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를 보호하는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권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 소재에 따라 구분하며,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마.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목적·임무에 따라 구분하며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은 최초로 이를 구분하였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가. (O). (강학상)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당해 경찰작용이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는지**(부수하지 않으면 보안경찰, 부수하면 협의의 행정경찰) 여부로 구분한다.

(강학상)보안경찰	•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않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 <b>예</b> 생활안전경찰, 경비경찰, 교통경찰, 풍속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 <b>예</b> 위생(보건)경찰, 건축경찰, 경제경찰, 산림경찰, 관세경찰, 철도경찰

나. (O).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강제력을 쓰면 질서경찰, 서비스 등 수단을 쓰면 봉사경찰)이다.

질서경찰	• 보통경찰기관의 직무범위 중에서 <b>강제력</b> 을 수단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활동 <b>예</b> 범 죄수사·진압, 즉시강제, 경찰강제
봉사경찰	• 보통경찰기관의 직무범위 중에서 <b>강제력이 아닌</b> 서비스·계몽·지도 등을 통하여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비권력적 경찰활동 <b>예</b> 생활안전(방법)지도, 청소년선도, 교통정보의 제공, 생활안전순찰, 수난구호 등

다. (O).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른 구분**(미리 작용하면 예방경찰, 사후에 작용하면 진압경찰)이다.

예방경찰	• 경찰상 위해 발생을 <b>사전에</b> 방지하기 위한 비권력적 또는 권력적 작용으로 (광의의) 행정경찰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b>주로 비권력적 수단</b> 이 사용된다.
진압경찰	• <b>이미 위험이 실현</b> 되어 진행중인 장애를 제거하거나 이미 발생한 범죄의 수사를 위한 <b>권력적 작용</b> 을 말한다.

라. (X).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구분 기준(권한과 책임소재)에 대한 설명은 옳으나,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이 국가에 있는 **국가경찰**이다. **국가경찰은 통상 중앙집권화**된 대규모 관료제 조직의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 (O).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목적과 임무 또는 3권분립 사상에 따른 구분으로서, 3권 분립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1795)’에서 확립**되었다.

행정경찰	• 행정작용의 일부로서의 경찰, 즉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작용을 하는 경찰을 말한다.
사법경찰	• 범죄수사·피의자 체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즉 <b>형사사법 작용</b> 을 하는 경찰을 말한다.

4. 경찰의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실정법상의 규정을 토대로 경찰의 임무를 살펴보면,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나.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 기능성의 불가침’이다.
다.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은 위험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구체적 위험’과 ‘추정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혐의’로 구분한다.
라.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공공의 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마. 경찰의 임무를 치안서비스의 제공으로 볼 때,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오늘날 국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경찰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③

가. (O).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실정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의 임무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실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경찰 임무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임무**라고 본다.

나. (X). 공공의 안녕은 ‘①**법질서**의 불가침성, ②**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 ③**개인**의 권리 및 법익의 불가침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성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자 다른 요소들의 토대가 되는 ‘①**법질서**의 불가침성’이 공공 안녕의 제 1요소라고 본다.

다. (X). 위험이 얼마나 현실화 되었느냐에 따라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한다. 추정적 위험은 위험의 인식여부에 따른 분류 중 “오상위험”의 다른 표현이다.

구체적 위험	• 개별 사안에서 경찰관이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가까운 장래에 <b>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개연성)</b> 이 존재하는 경우
추상적 위험	• 개별 사안이 아닌,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에서는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의, <b>구체적 위험의 예견가능성</b>

라. (O). 공공의 질서라 함은 시대의 지배적인 윤리와 가치관에 따를 때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것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와 관련이 있는 개념로서, 어떠한 행위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다. [예] 60년대 경찰의 장발단속과 미니스커트 단속

마. (O). 오늘날 현대경찰에게는 적극적인 서비스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역할(이른바 급부행정적 서비스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예] 교통정보 또는 지리정보의 제공, 청소년선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5. **협의를 경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 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 ② 경찰기관 외의 일반행정기관에서는 발동할 수 없다.
- ③ 협의의 경찰권은 경찰책임자에게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상 근거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상 위하나 장에 직접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도 권한이 발동될 수 있다.
- ④ 국회의장의 국회경호권이나 법원의 법정질서유지권은 협의의 경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 ② (X). 협의의 경찰권이라 함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생경찰이나 건축경찰, 산림경찰 등의 경우와 같이 일반행정기관이 비록 부수적으로라도 질서유지 작용을 하는 경우(협의의 행정경찰작용)에는 일반행정기관이 협의의 경찰권을 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O). 경찰긴급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비록 경찰비책임자라 하여도 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 ④ (O). 협의의 경찰권은 일반통치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국회의장의 국회경호권(**의원경찰**)이나, 법원 재판장의 질서유지권(**법정경찰**)과 같이 부분사회의 내부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협의의 경찰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6.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이란 경찰청장, 각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 ③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④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정답 ②

② (X). 경찰청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훈령**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이란 각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의 장,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경찰청 관·국의 장을 말한다.

① (O).

**훈령**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③ (O).

**훈령**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9조(사전컨설팅 감사 결과의 처리) ①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훈령**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0조(사전컨설팅 감사의 효력) ① 감사관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7. 경찰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주주의 이념은 국가조직과 국민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조직구성원 상호관계에서도 중요하다.
- ②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 ③ 중앙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의 적절한 권한분배 및 경찰관의 민주주의 의식 확립 등은 경찰의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대내적 방안이다.
- ④ 헌법 제10조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는 인권존중 이념과 관련된 규정이다.

정답 ②

② (X). 행정기본법에 명문 규정이 존재한다.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① (O). 국가기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역시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경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O). 위 ②와 같이 **경찰조직의 대내적 민주화 방안**은 (i) **경찰조직 내부의 적절한 권한 분배**(중앙경찰과 지방경찰 간 그리고 상하 경찰기관 간에 권한의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와 (ii) **경찰관 개인의 민주적 의식 확립**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④ (O). 이 외에도 경직법 제1조도 인권보호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경찰법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

**8. 경찰 전문직업화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문가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부권주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②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소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전문직들은 그들의 지식과 기술로 상당한 사회적 힘을 소유하지만, 이러한 힘을 공적 이익에만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 ④ 전문직업화를 위해 고학력을 요구할 경우, 경제적 약자 등은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공직 진출이 제한되는 등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X). 공적 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문제점인 것이다.**

- ① (O). **부권주의:** 아버지가 자식의 문제를 권위적·일방적으로 결정하듯, 전문가가 우월한 지위·지식을 이용하여 상대방 입장을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부권주의는 치안서비스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
- ② (O). **소외:**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④ (O). **차별:** 입직요건으로 고학력을 요구할 경우 전문직이 되는데 장기간의 교육과 비용이 들어,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경제적·사회적 약자 등의 공직진출 제한이라는 '차별'문제가 야기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X). ④ (O). 포상금은 지급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이득을 가져온 경우에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O).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O).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③**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0.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한 인물과 활동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나석주: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 면서 식민수탈의 심장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 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나. 김 석: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윤봉길 의사를 배후 지원하였다.  
 다. 김용원: 김구 선생의 뒤를 이어 경무국장을 역임하였고 귀국 후 군자금 모금, 체포와 병보석을 반복하다가 순국하였다.  
 라. 김 철: 의경대 심판을 역임하였으며,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 잠입하였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감금당하였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①

① (O). 모두 옳은 설명이다.

11. 영국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829년 근대경찰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필경(Sir Robert Peel)의 제의로 영국 최초의 근대 경찰조직인 수도경찰청이 창설되었다.
- ② 1964년 「경찰법」을 통해 내무부장관,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3원체제를 설정하였다.
- ③ 2002년 「경찰개혁법」이 제정되어 지방경찰위원회 및 지방경찰 청장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 ④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은 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 평의회, 지방경찰청장, 내무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4원 체제로의 변화를 통해 자치경찰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정답 ③

- ③ (X). 영국은 전 세계에서 **자치경찰제도를 가장 선도적·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전체적으로 자치경찰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찰제도가 발전해 왔다. 단, 2000년대 영국의 ‘신 공공관리론’에 따른 정부기조의 변화로 인하여 2002년 「경찰개혁법(the Police Reform Act)」이 제정되었고, 내무부장관의 지방경찰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가 강화되면서 지방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어 그 결과 지방경찰위원회가 가장 약한 구성요소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12.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 중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Neighborhood-oriented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확인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경찰인력과 자원을 배치하여 범죄나 무질서에 대한 예방을 강조한다.  
 ② 시민의 서비스 요청에 반응하는 경찰활동의 반응적 기능, 경찰관들이 확인된 범죄문제에 대해 조직화된 순찰전략을 개발·기획하는 사전적 기능과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확인하고 알려 주기 위한 경찰과 시민 사이의 적극적인 협력적 기능을 연결하고자 시도한다.  
 ③ 범죄자의 활동과 조직범죄집단·중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예방 등에 초점을 두며 증가되는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 범죄정보를 통합한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을 강조한다.  
 ④ 형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대신에 문제해결에 대한 합리적·분석적 접근법을 강조한다.

정답 ②

- ② (O).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NOP)**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위하여 **경찰과 주민의 의사소통라인을 개설**하려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문을 살펴보면, 시민은 경찰에게 지역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경찰은 시민들에게 지역사회의 무질서 문제를 알려주면서 서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문은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에 가장 가까운 설명으로 볼 수 있다.

- ① (X).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trategic Oriented Policing: SOP)**은 확인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경찰자원을 재분배**하고,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절차**를 통해 범죄적 요소나 사회무질서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③, ④ (X).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 POP)**은 지역사회 내에서 무엇이 범죄나 무질서의 원인인지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형법의 사용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형법의 사용을 통한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 역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서는 중요한 수단으로 상징하고 있으며, 다만 형법 자체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협력, 그리고 문제해결에 대한 합리적·분석적 접근법(SARA모델)을 함께 강조한다.

13. 경찰통제의 필요성과 기본요소를 구분할 때, 경찰통제의 기본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권한의 분산: 경찰의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간의 권한 분산, 상위계급자와 하위계급자 간의 권한분산 등이 필요하다.  
 ② 정보의 공개: 경찰의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기관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독선과 부패는 억제될 수 있다.  
 ③ 인권의 보호: 경찰활동은 특성상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④ 참여의 보장: 경찰은 국민에게 행정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답 ③

- ③ (X). 경찰통제를 그 “필요성”과 통제의 “기본요소”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경우, **인권의 보호**는 경찰통제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분류한다.

<경찰통제의 필요성> ①경찰의 민주적 운영, ②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③경찰활동의 법치주의 도모, ④국민의 인권보호, ⑤조직 자체의 부패방지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권한분산	• 집중된 권한은 남용되기 쉬우므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사이에,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권한분산 필요
정보공개	•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의 투명화로 경찰조직의 독선과 부패억제 가능
국민참여	• 행정절차법에 따른 국민참여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 가능 •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제도 역시 국민참여 수단 중 하나임
책임	• 경찰작용에 대해 사법심사를 통한 책임(행정책임·형사책임·민사책임)을 인정
환류	• 확인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Feedback - 환류)

14. 경찰홍보의 유형과 관련하여 (가)와 (나)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가)는 인쇄매체, 유인물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긍정적인 점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의미하고 (나)는 단순히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대중매체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경찰의 긍정적인 측면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말한다.

- |   |              |                         |
|---|--------------|-------------------------|
|   | (가)          | (나)                     |
| ① | 협의를 홍보       | 언론관계(Press Relations)   |
| ② | 협의를 홍보       | 대중매체관계(Media Relations) |
| ③ |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 | 언론관계(Press Relations)   |
| ④ |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 | 대중매체관계(Media Relations) |

정답 ②

② (O).

유형	내용
협의를 홍보 (Public Relations)	• 인쇄매체·유인물·팸플렛 등 각종 매체를 통해 <b>알리고 싶은 긍정적 부분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홍보활동</b>
지역공동체관계, CR (Community Relations)	• 지역사회 내의 각종 기관 및 주민들과 유기적인 연락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찰활동을 하는 동시에, 경찰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종합적인 <b>지역사회 홍보체계</b>
언론관계, PR (Press Relations)	• 신문·잡지·TV·라디오 등의 <b>보도기능에 대응하는 활동</b> 으로 개별 사건사고에 대한 기자들의 <b>질의에 답하는 대응적·소극적 홍보활동</b>
대중매체관계, MR (Media Relations)	• 종합적인 홍보활동으로 신문·방송 및 영상물 등 각종 대중매체 제작자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b>대중매체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면서 경찰의 긍정적인 측면을 널리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b>
기업이미지식 홍보	• 시민을 소비자로서 보는 시민중심의 행정 관점에서 발달 • <b>영·미를 중심으로 발달한 적극적인 홍보활동</b> 으로 경찰이 더 이상의 독점적인 치안기구가 아니라는 인식에 근거한 개념 • <b>조직이미지를 개선</b> 하여 국민의 지지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획득, 타 조직 및 국민의 협력확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홍보활동 • 일반기업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료광고를 내고 <b>친근한 상징물이나 캐릭터를 개발·전파</b> 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포돌이·포순이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자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① 정당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 공립대학의 부교수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답 ③

③ (O). 이러한 결격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법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2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 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아니한다.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호 단서에 따른다.

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의 대상자로는 경찰청장과국가수사 본부장이 규정되어 있다.  
 나.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 및 상임 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시·도지사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려면 해당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해친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라.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가. (O).

경찰법 제14조(경찰청장)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경찰법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나. (X). 해당 내용은 2022. 11. 15. 개정되기 전의 경찰법(법률 제17689호) 제36조((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규정에 존재하던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2022. 11. 15. 개정되어 삭제되었으므로 틀린 내용이다.

다. (X) 시·도지사의 재의요구 사유는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한 때**”이고,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의 재의요구 **요청**(→시도지사에게) 사유는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 이다.

경찰법 제25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라. (X).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찰법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7.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기관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포함된다.
- 나.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다.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라.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① 가, 나
- ③ 나, 다, 라
- ② 가, 다, 라
- ④ 가, 나, 다, 라

정답 ④

가. (O). 라. (O)

- 경찰공무원법 제31조(고충심사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나. (O)

- 대통령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2(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③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④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 (O)

- 대통령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2(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②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이하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8.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둔다.
- ③ 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 ④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정답 ①

① (X). 국무총리 소속이다.

- 경찰공무원법 제32조(징계위원회)**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O).

경찰공무원법 제32조(징계위원회)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O)

경찰공무원법 제34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④ (O).

경찰공무원법 제33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위 규정을 표로 나타내면?

구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제청	집행	제청	집행	제청	집행	제청	집행
경무관 이상	경찰청장	대통령	경찰청장	대통령	경찰청장	대통령	경찰청장	대통령
총경	경찰청장	대통령	경찰청장	대통령	경찰청장		경찰청장	
경정	경찰청장	대통령	경찰청장	대통령	경찰청장		경찰청장	

19.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다.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증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②

- ② (O). 기본적으로 당연퇴직사유는 임용결격사유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본 문제는 그 서로 다른 부분을 아는지 묻는 문제가 아니라, 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면서도 그 자체로 틀린 내용을 묻는 것이다. 이 중 지문 다.의 경우 "배임수증"이 아닌 **형법상 횡령·배임(형법 제355조) 내지 업무상 횡령·배임(형법 제356조)**이므로 틀린 것이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횡령·배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삼·이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이 자는 아예 불가능!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0.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 1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근무자 및 철야 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③ 비상근무 율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④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 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④

- ④ (O).

**[훈령]**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① (X). 경찰기관의 장이 허가할 수도 있는 포상휴가는 1회 **10일** 이내이다.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포상휴가)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X). 경찰기관이 장이 허가하여야 하는 연일근무자 등 휴무의 경우, (i) 다음날 1일을 허가하는 대상은 **연일근무자·공휴일근무자**이고, (ii) 오후 2시 기준 반일을 허가하는 대상은 **당직·철야근무자**이다.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
2.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

③ (X). 병호비상에 대한 설명이다.

**문명**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7조(근무요령) ①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을 판단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등급	경력동원	근무기준
갑호비상	• 연가를 <b>중지</b> 하고, • 가용경력 <b>100%</b> 까지 동원할 수 있다.	• 지휘관과 참모는 <b>정착 근무</b> 원칙
을호비상	• 연가를 <b>중지</b> 하고, • 가용경력 <b>50%</b> 까지 동원할 수 있다.	• 지휘관과 참모는 <b>정위치 근무</b> 원칙
병호비상	• 부득이한 경우 제외, 연가를 <b>억제</b> 하고, • 가용경력 <b>30%</b> 까지 동원할 수 있다.	• 지휘관과 참모는 <b>정위치 근무</b> 또는 <b>지휘선상 위치 근무</b> 원칙

21.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적으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② 250cc 오토바이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그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 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 ③ 워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워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게 인정하려면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④ 제1종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번호만을 특정하였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기초자료가 되는 위반사고점수제조회와 임시운전면허증상의 면허의 종류 내지 소지면허란에 1종대형만을 기재한 경우에, 위 각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관리되고 있다면 제1종대형 운전면허와 제1종보통 운전면허는 모두 정지된다.

**정답** ④

- ④ (X). 복수의 운전면허가 1개 면허번호로 통합관리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어서 제1종 대형면허가 정지된다고 하여 당연히 1종 보통면허까지 정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요지판례】**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제1종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번호만을 특정한 경우, **위 각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대상은 제1종대형 운전면허에 국한되므로 제1종보통 운전면허는 정지되지 않는다**(대판 2000. 9. 26., 2000두5425).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거나 각 면허의 개별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① (O).

**【요지판례】**  
 ■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적으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0. 2. 25. 99두10520).

② (O).

**【요지판례】**  
 ■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대판 1992. 9. 22. 91누8289). →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던 여객버스 운전기사가 업무를 마치고 동료운전자들 2인과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혈중알콜 농도 0.15%의 주취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례

③ (O).

**【요지판례】**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게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인정하려면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판 2022. 5. 12. 2021도14074).

22.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불심검문 대상자가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서 한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흥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③ 불심검문 대상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정답** ①

① (X).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보았다.

**【요지판례】**  
 ■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관련조항】**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분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흥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④ (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23. A경찰서 소속 경찰관 甲은,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乙을 발견하였다. 甲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乙에 대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B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甲으로부터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B보건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 나. 甲은 乙이 휴대하고 있는 흉기를 발견하였을 경우 경찰관서에 이를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 다. 乙의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甲은 乙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 즉시 그 사실을 A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 甲이 乙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사실을 보고받은 A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乙을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 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①

가. (O).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나. (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다. 라. (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④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긴급구호 요청이나 경찰관서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Tip** 경찰관서장 등 보고 \*경직법·경직법 시행령·보고절차규칙(훈령)에 관련 내용이 혼재되어있음!

표준조치	내용	기한
제3조 불심검문	동행검문 시	24시간 내
제4조 보호조치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인계 시	즉시
	임시영치 시	24시간 내
제5조 위험발생 방지조치	해당 조치 시	-
제6조 범죄예방·제지	범죄행위 제지 시	-
제7조 위험방지 출입	예방출입·긴급검색 시	-

2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가. 보상금의 최고액은 ( )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보상금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보상금 환수통지일부부터 ( )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① 35    ② 40    ③ 45    ④ 50

정답 ④

가. 5

**대통령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0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40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⑤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대통령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1조의2(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 ② 법 제11조의3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25.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먼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③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이 포함된다.
- ④ 살수거리가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인 경우 수압기준은 7바(bar) 이하라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한다.

정답 ④

④ (X).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살수거리가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인 경우 수압기준은 5바 (bar) 이하이어야 한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제13조의2제2항 전단 관련)

살수거리	수압기준
10미터 이하	3바(bar) 이하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5바(bar) 이하
20미터 초과 25미터 이하	7바(bar) 이하
25미터 초과	13바(bar) 이하

① (O)

**【요지판례】**

■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먼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9. 1. 17. 선고 2015다236196).

② (O)

**【요지판례】**

■ 살수차는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경찰장구나 무기 등 다른 위해성 경찰장비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에 해당하고, 집회의 자유는 인격 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자 표현의 자유와 함께 대의 민주주의 실현의 기본 요소다.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이처럼 중요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헌재 2018. 5. 31. 2015헌마476).

③ (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살수차, 제10조의3에 따른 분사기, 최루탄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6.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이하 '제6조')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나. 제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 다. 제6조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 라.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 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가. 나. (O)

**【요지판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대판 2018. 12. 13. 2016도19417).

다. (O)

**【요지판례】**

■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대판 2008. 11. 13. 2007도9794).

라. (O)

**【요지판례】**

■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대판 2021. 11. 11. 2018다288631). → ①경찰관의 해산명령 및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각각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② 9개의 서명지 박스를 1개씩 들고 효자로를 따라 청와대 민원실까지 한 줄로 걸어가는 것은 집시법상의 '시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사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집회·시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히 초래한 것도 아니다. ③따라서 집시법에 따른 해산명령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고 및 제지조치는 위법하다.

27.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경찰서장은 범칙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나.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다.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낸 경우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행위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②

가. (X).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으나,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나. (X). 통고처분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요지판례】**

■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다(헌재 1998. 5. 28. 96헌바4)

다. (O).

**【요지판례】**

■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2012. 9. 13, 2012도6612).

라. (X). 비록 시간·장소적 근접성은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보았다.

**【요지판례】**

■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행위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행위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2. 11. 22. 2001도849).

28.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에 관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대형 낙석이 교통정리를 위해 이동 중이던 순찰차를 덮쳐 경찰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은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위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 ②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적이 당해 직무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도주차량의 도주의 태양 및 도로교통상황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유무 및 내용에 비추어 추적이 개시·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④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서 사용할 조형물을 차량에 싣고 와 집회 장소 인근 도로에 정차한 후 내려놓으려고 하자 경찰관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조형물이 실린 채로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였고 이에 집회참가자들이 스스로 차량을 옮기겠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위 차량을 견인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정답 ①**

① (X). 이중배상금지원칙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일반 직무집행’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이다.

**【요지판례】**

■ 경찰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주변 교통정리를 위하여 사고현장 부근으로 순찰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산에서 떨어진 대형 낙석이 순찰차를 덮쳐 사망**하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책을 주장한 사안에서,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위 면책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대판 2011. 3. 10, 2010다85942).

② (O).

**【요지판례】**

■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적이 당해 직무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도주차량의 도주의 태양 및 도로교통상황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유무 및 내용에 비추어 **추적의 개시·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0. 11. 10, 2000다26807·26814).

③ (O).

**【요지판례】**

■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 2001. 1. 5. 98다39060).

공무원 긍정	공무원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정우체국장, 선장</li> <li>• 국회의원, 법관, 헌재 재판관, 검사</li> <li>• 집행관</li> <li>• 향토예비군, 방범대원, 카투사</li> <li>• 군 운전업무 종사자</li> <li>• <b>교통할아버지</b>, 통장, <b>청원경찰</b></li> <li>• 수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진하여 협력하는 사인</li> <li>• <b>의용소방대원</b></li> <li>• 시영버스운전수</li> </ul>

④ (O).

**【요지판례】**

■ 갑 단체 소속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서 사용할 조형물을 차량에 신고 와 집회 장소 인근 도로에 정착한 후 내려놓으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조형물이 실린 채로 차량을 견인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을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갑 단체의 집회의 자유와 을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대판 2022. 3. 31. 2017다218475) → 원고 단체는 시위가 아니라 옥외집회를 주최했을 뿐이어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에 사용할 물품을 신고할 의무가 없고, 스스로 이 사건 차량을 옮기겠다고 말함으로써 물건을 내리려는 시도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경찰관들이 이 사건 차량을 끌고 가고 원고 2를 체포한 것은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직무집행이다. 경찰관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원심의 입장)

29.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편성원리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임무를 권한과 책임에 따라 나누어 배치하고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한다.

- ①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행정의 질서와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② 계층에 따라 의사결정의 검토가 이루어져 신중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 ③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의 신속한 도입이 어렵다.
- ④ 특정분야의 전문성 확보에 용이하며 업무의 세분화로 인해 시간과 경비가 절약될 수 있다.

**정답** ④

④ (X). 해당 보기는 조직편성원리 중 “**계층제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반면, 지문의 내용은 “**분업화·전문화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치 않은 설명이다.

30.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에 관한 비교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직위분류제는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  
 나. 직위분류제는 부서 간의 횡적 협조에 용이하다.  
 다.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의 신속성과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라. 계급제는 보수체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마. 계급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바.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미약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기 쉽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①**

- 가. (X). 일반행정이 양성에 유리한 것은 계층제이다(= 공채 김순경).
- 나. (X). 부서 간 횡적 협조에 용이한 것은 계층제이다(= 공채 김순경).
- 다. (X). 인사배치의 신속성·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계층제이다(= 공채 김순경).
- 라. (X). 보수체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동일직무 동일보수' 원칙을 준수하기 용이한 직위분류제이다.
- 마. (X). 일반적으로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은 중·횡으로 모두 이러한 한계가 명확한 직위분류제의 설명이다. 한편, 계층제의 경우에도 종적으로는 권한과 책임 한계가 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나, 해당 지문은 계층제는 권한과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입장에 따라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 바. (X). 신분보장이 미약하여 행정 안전성을 저해하기 쉬운 것은 직위분류제이다(= 뇌파분석관 이경장)

**31.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행정의 재량범위가 확대되어 예산유용 및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 ②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국민이 정부의 활동과 목적을 이해하는데 용이하나 단위월가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하다.
- ③ 자본예산제도는 기획(planning), 사업구조화(programming), 예산(budgeting)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 ④ 영기준예산제도는 모든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실시 하며 장기적인 계획에 중점을 둔다.

**정답 ②**

- ② (O). **품목별 예산제도**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 ① (X). **품목별 예산제도**는 세부 품목별로 금액이 결정되어 있어 행정관료의 **재량범위가 축소**되어 부정과 예산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 경비사용의 적정화
- ③ (X). **장기적인 기본계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예산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행하려는 "**계획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계획예산제도의 예시**

Planning	Program	Sub Category	Program Element	연도별 예산
고도화 정보사회 범죄대응능력 강화	정보통신망 이용 신종범죄 대응	암호화폐 범죄대응	연구용역 발주	...
			민간사업자 협력체계 구축	...
			추적프로그램 개발	2022년: 10억원 2023년: 12억원
		...	...	
		...	...	

- ④ (X). **영기준예산제도**가 모든 사업·활동에 대해서 영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근본적인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으나, 장기적인 계획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

**3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공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②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기안문을 검토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을 직접 수정하거나 기안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공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①

① (X). 원칙은 그러하나, 보조기관·보좌기관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보좌기관 결재를 받는다.

**대통령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O).

**대통령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기안문을 검토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을 직접 수정하거나 기안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O).

**대통령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O).

**대통령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하여 감찰관 보직 후 3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감찰부서장은 감찰정보의 구분 및 감찰활동 착수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찰정보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감찰정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④ 감찰관은 민원사건을 접수한 경우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와 감찰조사를 종결하였을 때에 민원인 또는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가 감찰조사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④

④ (O).

**헌법 경찰 감찰 규칙 제35조(민원사건의 처리)** ④ 감찰관은 민원사건을 접수한 경우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와 감찰조사를 **종결하였을 때**에 민원인 또는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가 감찰조사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① (X). 3년이 아닌 **2년**이다.

**헌법 경찰 감찰 규칙 제8조(감찰관 적격심사)**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하여 감찰관 보직 후 **2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X). 감찰정보심의회의는 **임의적 설치기관**이다. 또한, 설치되는 경우 그 인원수는 위원장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 이다.

**헌법** 경찰 감찰 규칙 제22조(감찰정보심의회) ① 감찰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찰정보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감찰정보의 구분
2. 제15조에 따른 감찰활동 착수와 관련된 사항

② 감찰정보심의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X). 민원사건은 **2개월** 내 신속처리, 기관통보사건은 **1개월** 내 신속처리임을 잘 비교해 둘 필요가 있다.

**헌법** 경찰 감찰 규칙 제35조(민원사건의 처리) ①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4.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의!] 2024. 7. 24.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문제임!**

- ① “출동요소”란 112순찰차, 형사기동대차, 교통순찰차, 고속도로 순찰차, 지구대·파출소의 근무자 및 인접 경찰관서의 근무자, 112치안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112신고 및 치안상황 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을 말한다.
- ② 모든 출동요소는 사건 장소와의 거리, 사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신고 대응에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출동 지령이 없더라도 스스로 출동의사를 밝히고 출동하는 등 112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③ 112신고는 현장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다.
- ④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code 3 또는 code 4 신고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답** ②

② (O). **(현행 규칙에서 삭제됨!)**

**예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3조(현장출동) ③ **모든 출동요소는** 사건 장소와의 거리, 사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신고 대응에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출동 지령이 없더라도 스스로 출동의사를 밝히고 출동하는 등 112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① (X), ‘112치안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112신고 및 치안상황 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112요원”에 해당한다. **(현행 규칙에서 삭제됨!)**

**예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출동요소”란 112순찰차, 형사기동대차, 교통순찰차, 고속도로순찰차, 지구대·파출소의 근무자 및 인접 경찰관서의 근무자 등을 말한다.
8. “112요원”이란 112치안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112신고 및 치안상황 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 **예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출동 경찰관”이란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지령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여 112신고를 조치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③ (X).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한다.

**예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8조(신고의 접수) ① 112신고는 **현장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과 관계없이** 신고를 받은 112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다.

**[현행]** **예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6조(신고의 접수) ① 112신고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현장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과 관계없이**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에서 신속하게 접수한다.



④ (X). code 4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체종결 등을 할 수 있다.

**예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0조(지령) ②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code 4의 신고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현행]** **예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8조(지령) ) ② 112근무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코드 4 신고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 경찰관에게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담당 부서 또는 112신고 관계 기관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3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 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다.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 라.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③

가. (O)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O).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 (X).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 내 집행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각각 집행한다.

라. (X). '긴급임시조치 한 때' 부터 48시간 이내이다. → '응급조치' 후 일정시간 내(72시간 내) 임시조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동학대의 경우이다.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비교**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6.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부터 라.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가. 검사는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 범죄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 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① 가.(O) 나.(O) 다.(O) 라.(O)
- ② 가.(O) 나.(X) 다.(O) 라.(X)
- ③ 가.(X) 나.(X) 다.(O) 라.(O)
- ④ 가.(X) 나.(O) 다.(O) 라.(X)

**정답** ③

가. (X). 수사기관인 검사·사법경찰관은 법원에 청구할 필요 없이 직접 공개할 수 있다. → 이미 법원에 공소제기가 되었으나 그 후 특정 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법원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과 구분!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X). 수사기관인 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라. (O)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7. 「청원경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업장이 시·도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②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정답 ③

- ③ (X).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주체는 당해 청원경찰에 대한 임용권자인 “청원주”이다. → 청원경찰의 임용에 있어 시도청장의 승인을 받을 뿐이지, 임용권자는 여전히 청원주임을 주의!

**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8. 「범죄인 인도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단,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제외한다.
- ② 검사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 명령이 없을 때에는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외교부장관은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② (O).

**범죄인 인도법 제30조(검사의 조치사항)** 검사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없을 때에는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① (X). 상호주의는 특히 인도조약에 체결되어있지 않은 경우 유용한 것이다.

**범죄인 인도법 제4조(상호주의)**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③ (X).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범죄인 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 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 (X). 결정주체는 법무부장관이다.

**범죄인 인도법 제16조(인도청구의 경합)** ① 법무부장관은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39. 「도로교통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부터 (다)까지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가)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 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나)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다)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 |   |         |         |      |
|---|---------|---------|------|
|   | (가)     | (나)     | (다)  |
| ① | 경찰서장    | 시장등     | 경찰청장 |
| ② | 시·도경찰청장 | 경찰청장    | 시장등  |
| ③ | 경찰서장    | 시·도경찰청장 | 경찰청장 |
| ④ | 시·도경찰청장 | 시장등     | 경찰청장 |

정답 ①

(가). 경찰서장이다. → 시도청장은 '구간을 정하여!'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나) 시장등이다. → 공동부령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상 보호구역 내 조치권한 중 운행속도 30Km 이내 제한조치권은 '시도청장이나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다) 경찰청장이다.

**도로교통법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4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차선 등 물건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 표지로 설정된 경계표지를 말하므로,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설정된 질서유지선은 이 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정 할 수 있다.
- ③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구두로 알릴 수 있다.
- ④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 법령상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외곽의 경계지역에만 설정되어야 한다.

정답 ④

④ (X).

**【요지판례】**

■ 질서유지선의 설정에 관한 집시법 및 집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집시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집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외곽의 경계지역뿐만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어야 하고, 질서유지선이 위 범위를 벗어나 설정되었다면 이는 집시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9.1.10, 2016도21311).

① (O)

**【요지판례】**

■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차선 등과 같이 **경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물건**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찰관들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이나 그 장소 안에서 출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집시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9. 1. 10. 2016도21311). → **경찰관들의 대열(사람의 대열)을 질서유지선으로 볼 수 없다.**

② (O)

**대통령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 등)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1. 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③ (O)

**대통령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 등) ②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본 자료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의 범위 이외의 이용허락을 얻기 위해서는 [polpyo@naver.com](mailto:polpyo@naver.com)으로 연락주시시오.

▶ 네이버 카페: MY STORY 서정표 경찰학 <https://cafe.naver.com/policepyo>

▶ 유튜브 라이브(06시 30분) [www.youtube.com/@mystory3727](http://www.youtube.com/@mystory3727)